

부 록 1: 우리나라 공제사업 현황

〈부록 표-1〉 국내 공제종류별 현황

구분	공제운영기관	근거규정	시행	공제종류	주무부서	업법 ¹⁾	협약 ²⁾	감독 ³⁾
일반 공제	농업협동조합	농업협동조합법	1961	생명공제, 손해공제, 제3공제	농수산부	○	○	○
	수산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법	1937	생명공제, 손해공제, 제3공제	농수산부	○	○	○
	새마을금고	새마을금고법	1991	생명공제, 손해공제, 제3공제	행안부	○	○	○
	신용협동조합	신용협동조합법	1987	생명공제, 손해공제, 제3공제	금융위	○	○	○
조합 공제	건설공제조합	건설산업기본법	1963	손해공제(근재, 배상책임, 보증, 건설공사, 조립 등), 제3공제(단체상해)	국토부	○	○	-
	교육시설재난공제회	연구실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화재로 인한 재해 보상에 관한 법률	1948	손해공제(교육시설건설공제, 재산종합), 제3공제(연구활동중종사자재해)	교과부	-	-	-
	대한건설폐기물공제조합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2000	손해공제(보증)	환경부	○	-	-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공제조합	건축사법	2011	손해공제(보증, 배상책임)	국토부	-	○	○
	대한설비건설공제조합	건설 산업 기본법	1996	손해공제 (보증, 근재, 영업배상책임)	국토부	○	○	○
	대한의사협회	의료법	1981	손해공제(배상책임)	복지부	-	-	-
	상조보증공제조합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2010	손해공제(배상책임, 보증)	공정위	○	-	-
	소방산업공제조합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2008	손해공제 (근재, 배상책임, 보증)	행안부	-	-	-
	소프트웨어공제조합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1997	손해공제(보증)	지경부	-	-	-
	어린이집안전공제회	영유아보육법	2009	영유아: 배상책임, 상해담보 종사자: 사망, 장해, 상해	복지부	○	-	-
	엔지니어링공제조합	엔지니어링 산업진흥법	1993	손해공제(보증, 손해배상)	지경부	-	-	-
	자본재공제조합	산업발전법	1987	손해공제(보증, 제조물책임, 신뢰성보험)	지경부	-	-	-
	전국개인택시공제조합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1993	손해공제(자동차)	국토부	○	-	-
	전국고용서비스협회	직업안정법	2007	손해공제(보증)	노동부	-	-	-
	전국버스공제조합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1981	손해공제(자동차)	국토부	○	-	-

구분	공제운영기관	근거규정	시행	공제종류	주무부서	업법 ¹⁾	협약 ²⁾	감독 ³⁾
	전국전세버스 운송사업조합 연합회공제조합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1997	손해공제(자동차)	국토부	○	-	-
	전국택시 공제조합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1979	손해공제(자동차)	국토부	○	-	-
	전국화물 자동차운송 사업연합회 공제조합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1981	손해공제(자동차, 적재물배상책임)	국토부	○	-	-
	전기공사 공제조합	전기공사공제 조합법	1984	손해공제(보증, 배상책임, 근재), 제3공제(단체상해)	지경부	-	-	-
	전문건설 공제조합	건설산업기본법	1988	손해공제(근재, 배상책임, 보증, 건설공사, 조립 등), 제3공제(단체상해)	국토부	○	○	-
	정보통신 공제조합	정보통신공사 업법	1988	손해공제(근재, 배상책임, 보증), 제3공제(단체상해)	방통위	-	-	-
	직접판매 공제조합	방물관매 등에 관한 법률	2002	손해공제(소비자피해보상)	공정위	○	-	-
	학교안전 공제중앙회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2009	요양, 간병, 장해, 유족, 장의, 배상책임공제	교과부	-	-	-
	학원안전 공제회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	2006	손해공제(배상책임), 제3공제(상해)	교과부	-	-	-
	한국건설감리 공제조합	건설기술관리법	2009	손해공제(배상책임, 보증), 제3공제(재해상해보상)	국토부	-	○	○
	한국골재협회 공제조합	골재채취법	2003	손해공제(보증)	국토부	-	○	○
	한국공인중개사 협회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1991	손해공제(손해배상책임)	국토부	-	-	○
	한국교직원 공제회	한국교직원 공제회법	1971	생명공제, 제3공제	교육부	-	-	-
	한국금속캔자원 재활용조합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2003	손해공제(보증)	환경부	-	-	-
	한국발포스티렌 재활용협회 공제조합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2003	손해공제(보증)	환경부	-	-	-
	한국산업폐자원 공제조합	폐기물관리법	2000	손해공제(보증)	환경부	-	-	-
	한국상조 공제조합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2010	손해공제(배상책임, 보증)	공정위	○	-	-
	한국선주 상호보험조합	선주상호보험 조합법	2000	손해공제(선주배상책임)	국토부	-	○	○
	한국의료폐기물 처리공제조합	폐기물관리법	2001	손해공제(보증)	환경부	-	-	-

구분	공제운영기관	근거규정	시행	공제종류	주무부서	업법 ¹⁾	협약 ²⁾	감독 ³⁾
	한국자원봉사 공제회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2009	제3공제(자원봉사활동 중 상해, 질병 및 피해자배상), 손해(피해자배상)	행안부	-	-	-
	한국조선공업 협동조합	산업발전법	1968	손해공제(선박건조, 보증)	지경부	-	-	-
	한국중이팩 자원순환협회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2003	손해공제(보증)	환경부	-	-	-
	한국지방재정 공제회	한국지방재정 공제회법	1964	손해공제(재해복구, 손해배상), 제3공제(단체상해)	행안부	-	-	-
	한국특수판매 공제조합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2003	손해공제(소비자피해보상)	공정위	○	-	-
	한국폐기물재활용공제조합	폐기물관리법	1999	손해공제(보증)	환경부	-	-	-
	한국해운조합	한국해운조합법	1962	손해공제 (선주배상책임, 선원, 선박)	국토부	-	-	-
정책성공제	건설근로자 공제회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1998	퇴직공제(가입의무화)	노동부	-	-	-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 설립 및 운영조례	2010	연금공제(적립형공제), 복지공제	경기도	-	-	-
	과학기술인 공제회	과학기술인 공제회법	2004	퇴직연금공제, 적립형공제, 복지	교과부	-	-	-
	중소기업중앙회 노란우산공제	중소기업 협동조합법	2007	퇴직금, 사망, 노령공제	중기청	○	-	-
상호부조형공제	경찰공제회	경찰공제회법	1989	사망, 퇴직급여, 복지급여	경찰청	-	-	-
	군인공제회	군인공제회법	1984	사망, 퇴직급여, 복지급여	국방부	-	-	-
	대한소방 공제회	대한소방 공제회법	1984	사망, 퇴직급여, 복지급여	방재청	-	-	-
	대한지방행정 공제회	대한지방행정 공제회법	1975	사망, 퇴직급여, 복지급여	행안부	-	-	-
	교정공제회	민법 제32조	1986	사망, 퇴직급여, 복지급여	법무부	-	-	-
	담배인삼 공제회	민법 제32조	1972	사망, 퇴직급여, 복지급여	농수산부	-	-	-
	대한의사복지 공제회	민법 제32조	2005	복지급여	복지부	-	-	-
	세우회	민법 제32조	1966	사망, 퇴직급여, 복지급여	기재부	-	-	-
	전국교수 공제회	민법 제32조	2003	사망, 퇴직급여, 복지급여	교과부	-	-	-
	철도공제조합	민법 제32조	1925	사망, 퇴직급여, 복지급여	국토부	-	-	-
한국관세사회	민법 제32조	2005	사망, 퇴직급여, 복지급여	기재부	-	-	-	

- 주: 1) 「보험업법」 적용배제 조항이 존재함.
 2) 인허가 및 감독기준 마련 시 금융위원회와 협의조항이 존재함.
 3)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의 조사 및 검사 요청 조항이 존재함.

부 록 2: 농협공제의 보험회사 전환에 따른 법률 적용

- 농협중앙회는 공제사업을 분리하여 농협생명보험과 농협손해보험을 각각 설립하고, 「농업협동조합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보험업법」의 적용을 받도록 함(제134조의 5).

- 「농업협동조합법」에 농협생명보험과 농협손해보험에 대해서는 「보험업법」의 적용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특례를 설치함(부칙 제15조).
 - 설립된 날로부터 5년까지 퇴직연금 자산관리업무를 위한 보험계약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상품을 판매할 수 없음.
 - 조합과 농협은행을 금융기관보험대리점으로 등록된 것으로 간주하고, 조합에 대해서는 농협생명보험 또는 농협손해보험을 위하여 보험계약 체결을 대리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5년간 다음과 같은 규제의 적용을 배제하도록 함.
 -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이 모집할 수 있는 상품의 범위(「보험업법」 제91조 제2항, 「보험업법시행령」 제40조제2항 및 별표⁴⁾)
 - 금융기관보험대리점 등의 모집방법, 모집에 종사하는 모집인의 수, 영업기준 등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보험업법」 제91조제3항, 「보험업법시행령」 제40조제3항에서11항)
 - 다만,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자산총액이 2조 원 이상인 조합이 모집할 수 있는 1개 농협생명보험 또는 농협손해보험 상품의 모집액은 각각 해당 조합이 신규로 모집하는 생명보험회사 상품의 모집총액 또는 손해보험회사 상품의 모집총액 중 다음 각 호의 비율을 초과하지 않아야 함.

〈부록 표-2〉 농협보험에 대한 금융기관 보험대리점 모집 비율 규제

기준		비율 한도
농협생명보험 또는 농협손해보험이 설립된 날부터	1년까지	100%
	2년까지	85%
	3년까지	70%
	4년까지	55%
	5년까지	40%

- 해당 금융기관의 점포 외의 장소에서 모집을 하는 행위(「보험업법」 제100조제1항제4호)
- 농협중앙회가 2009년 10월 28일까지 실시한 공제교육을 마친 공제모집 자격자는 농협생명보험 또는 농협손해보험이 설립된 날부터 2년까지 보험 모집을 할 수 있는 자로 봄.
- 이 법 시행 전의 조합과 중앙회의 공제계약에 대해서는 농협생명보험 또는 농협손해보험이 설립된 날부터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계약으로 보고 농협생명보험이 생명보험계약 전부를, 농협손해보험이 손해보험계약 전부를 각각 인수한 것으로 봄.
- 이 법 시행 전의 조합과 중앙회의 공제계약에 대해서는 특별계정을 설정하여 운용할 수 있고, 특별계정에 속하는 자산의 운용방법 및 비율, 자산의 평가, 이익의 분배, 자산운용실적의 비교·공시, 운용전문인력의 확보, 의결권 행사의 제한 등 보험계약자의 보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농림수산식품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도록 함.
- 농협생명보험 또는 농협손해보험이 이 법 시행 전에 조합과 농협중앙회가 판매한 공제상품과 같은 내용의 보험상품을 신규로 판매하기 위해서는 「보험업법」 제127조에 따른 신고 또는 제출을 하도록 함.
- 농협생명보험 또는 농협손해보험이 설립되는 경우 2009년 10월 28일 현재 조합과 농협중앙회가 판매하는 공제상품에 관해서는 이에 상응하는 보험종목으로 「보험업법」 제4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되, 다음의 보험상품에 관해서는 다음과 같은 구분에 따른 조건으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봄.

〈부록 표-3〉 농협보험에 대한 취급종목 허가 의제

상품	조건
보증과 관련한 보험상품	조합의 조합원, 조합·중앙회·농협경제지주회사·농협금융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의 임원·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신원보증보험
	온라인복권의 이행(지급)보증보험
	온라인복권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채무이행보증보험
농기계종합보험상품	동일한 위험을 보장하는 보험상품을 판매

- 농협손해보험이 자동차보험 종목 중 농기계종합보험상품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상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새로 자동차보험업 허가를 받아야 함.
- 농협중앙회는 농협보험이 업무 수행 시 중앙회의 회원 및 회원의 조합원의 이익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도·감독하여야 함(제142조의 2).
- 농협중앙회는 농업협동조합의 명칭을 사용하는 영리법인에 대하여 영업수익 또는 매출액의 1000분의 25범위 내에서 총회에서 정하는 부과율로 명칭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음(제159조의 2).
- 개정 「농업협동조합법」은 2012년 3월 2일부터 시행됨.